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정부당국의 미진한 폐암 대책, 각 분야 전문가가 머리 맞댄다

일시 : 2023. 9. 11 (월) 9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이재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 진행순서 ◀

1. 여는 행사 (09:00~09:20)

사회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 인사말
 - 당 대표
 - 주최 국회의원
 - 대책위 참가자 소개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폐암대책위 공동대표
-

2. 발언 및 대담 (09:20~11:30)

좌장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소장

사례 : 학교급식노동자 노동환경

발제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역할, 운영경과 및 지속 가능 방안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발제 2. 폐암 예방대책과 치료지원 방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

발제 3.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
경남 개선사례 및 개선 방향

창원대학교

하현철 교수

발제 4. 국가책임과 피해자 지원 대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토론 1. 교육부 폐암 종합 대책

교육부 학교안전정책과

정순채 사무관

토론 2. 시·도교육청 결원 현황 및 대책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서기관

토론 3. 피해자 지원, 유해인자 관련 고시 제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최성필 사무관

토론 4. 범부처 간 종합적 해법(법안 제개정) 필요성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

질의 응답

인사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강득구, 강민정, 이재정, 강성희, 강은미 의원님과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함께 자리한 급식 노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많은 분들의 준비로 마련됐습니다.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조합원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박은경 대표님, 최민 활동가님과 하현철 교수님, 오민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좌장으로 함께해 주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님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와주신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노동자의 폐암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환기시설과 조리 및 급식 환경의 전면적인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각 교육청 별로 전담팀이 구성되고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이 느끼는 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 8월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하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이 개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적용 범위와 튀김 스푼 등 조리 기구별 환기설비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서 교육청에 안내됐습니다. 폐암 검진이 완료되고 현장 설비에 대한 개선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열리는 오늘 토론회이기에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기존 노후화된 학교 설비로 인해 신규 환기시설이 규격에 맞지 않는 등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자리에서 유의미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궈낸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는 일은 학교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급식, 조리 환경 개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관련 사안들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며 앞으로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회의원 서동용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를 함께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준비에 애써 주신 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와 공동주최 해주신 강민정·강성희·강은미·서동용·이은주·이재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급식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그로 인한 건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폐CT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급식노동자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 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3월 교육부 발표에서 누락된 서울·경기·충북 세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를 추가 확인한 결과, 21명의 폐암 확진자가 추가되어 총 52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급식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9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마 폐암이 확진된 후, 산재가 승인되기 전까지 실질적인 휴게권 보장이 어려워 중도퇴사하는 등의 경우가 교육부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짐작해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급식노동자들은 산재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족한 조리인원’ 과 ‘과도한 업무량’ 을 손꼽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좌장을 맡아주신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박은경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활동가님, 하현철 창원대학교 교수님,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님, 그리고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교육부·고용노동부·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학교 급식실은 우리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 대화와 교육이 있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오늘의 자리가 정부 당국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폐암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해 입법적·정책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회의원 강득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지난 2021년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래 학교 급식실의 충격적인 작업환경에 대한 기사와 현장증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음의 급식실 문제 해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를 요구하며 정부와 교육당국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교부했지만 폐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환기시설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은 전과 다를 것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급식실’ 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고 급식실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무시하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무책임함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인력난으로 이어져 무상급식 정책의 유지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무상급식의 유지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이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현실의 진단을 넘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이재정 의원님,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님 교육부 김동로 서기관님, 정순채 사무관님, 고용노동부 최성필 사무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하여 역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위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와 시민사회 등 교육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국민의 지지 속에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또한 13년 시간 동안 학교급식 현장을 지켜 온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급식노동자의 심각한 건강위협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진행된 폐 검진 결과, 대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이상소견자로 확인되고 폐암 확진자를 포함한 의심자가 341명이라는 것은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위협을 동반한 노동환경은 인력 이탈을 가속화 합니다. 이는 적정인력 확보를 저해하고,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 자체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급식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방안과 인력확보,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건강위협이 전제되지 않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오늘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좌장을 맡아주신 이윤근 소장님과 발제자, 토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사’ 지면으로 인사 드리게 되었지만, 축하 말씀을 전달 드리기엔 각종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학교급식 노동자분들의 현실이 가슴 깊이 걸려 감히 말씀을 더하기 어렵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되신 분이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8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에 이르자 산재 승인자가 9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 달 사이 열 분씩 폐암 피해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의 사태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급식 노동자의 병마와 골병 위에 쌓아 올린 ‘국가 책임’이라는 지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의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햇수로 3년 만에 첫 대책이 나와 적극 행정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부족하고 불충분한 면피성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책임 있는 당국과 소관 부처가 역할과 의무를 방기하는 사이,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직접 해법 모색에 나섰다든 사실에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산업안전 분야는 저의 주요 의정 분야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산업안전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든 ‘로벤스 보고서’의 번역과 해제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안전 제도 구축에 노동자의 직접 참여가 몹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이제라도 현장의 노동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길 촉구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또한 여러분과 더 가까운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하며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3. 9. 11.(화)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사회 각계각층이 우리 아이들과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온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실 신규채용이 미달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 미달 사태와 인력 부족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급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맛있다.”, “고맙다.” 라는 말 한마디에 자부심을 느끼며 급식을 만들어온 학교급식노동자에게 남은 것이 각종 산재와 폐암이라는 것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제 급식노동자들이 결원인 상태에서 급식을 만들고 있고 우리는 무상급식이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정상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고 부실 급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상태라면 안전한 급식, 맛있는 급식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국회와 토론회에 참여하는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위 역시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무상급식을 함께 일구어온 구성원들이 위협에 처한 학교급식을 이어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부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와 산업재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기간 만들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이 조속히 개선되고 적정 인력이 충원되고 나아가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힘써주십시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가장 앞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이재정 의원님,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님 교육부 김동로 서기관님, 정순채 사무관님, 고용노동부 최성필 사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9월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

인사말



반갑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입니다.

학교급식실 폐암이 사업재해로 승인된 2021년 이래로 교육당국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동조합은 여러 국회의원들과 3차례의 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2년 6개월동안 현재 근무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폐CT검진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눈에 보이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환기시설 설비지침이 나오고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가 발표되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교육청은 손에 꼽힙니다.

또한 기저질환없이 학교급식실에서 일했지만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직무연관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조리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10년 미만의 급식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폐암으로 병들고 인력수급마저 어려워져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그다 대한민국 학교급식 시스템이 붕괴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교육당국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입니다. 소극적인 대책만 내어놓을때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제시함으로써 학교급식을 지켜야 할때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세계적인 자랑 친환경 무상급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고, 더는 폐암으로 고통받는 학교급식실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의원님 교육부, 고용노동부,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9월 1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이 윤희

발제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역할, 운영 경과 및 지속 가능 방안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들어가며

지난 20년의 운동 역사를 뒤 안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의 근본적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애초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를 창립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제도화를 요구하고 실천을 주도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평가 및 의견을 제시해 왔던 정책집행 주역으로서 학부모들의 활동을 먼저 소개하며 학교급식 현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평학)'¹⁾ 활동의 근간인 "평등 교육"과 "아동 인권수호"(학생인권조례 제정)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 과정이며 시민사회가 끌어낸 "민주주의", "지방자치", "거버넌스"의 전략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어갈 수 있게 하려면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는 공공재(公共財)로서 반드시 친환경이어야 하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교육이며 헌법에 따른 교육원칙으로 무상급식을 이야기했던 것이 의무교육을 넘어 고등학교까지 적용되며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 급식의 범주로까지²⁾ '친환경 무상의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을 통한 복지사회구축을 목표로 교육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투자로서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사업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I. 대한민국의 학교급식 운동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출범

평학의 이 빈파 선생은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통해 교육 시민운동을 하고 있던 지난 2002년,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제공된 급식재료(연두부)가 시큼하고 떨어뜨림하여 식중독 의심 사건이 벌어지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선생은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이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문제의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를 방문해본 결과 문제점을 찾지 못하였고, 공급 루트상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며 이 과정을 역추적하게 되었다. 왕복 14시간이나 걸리는 시골 오지에 있는 생산공장을 찾아가 원재료의 생산과정과 가공공정 및 공장환경 등을 살펴보면 확인한 것은 두부 응고제(화학물질 GDLS) 투입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일정한 용량보다 과하게 넣은 작업 공정상의 문제였으며 당시 공장장의 숙취 상태였다는 것이다. 결국 '두부 공장의 중대 과실 헤프닝'이었음을 결론 내리고 이 과정상 소요된 시간과 비용과 관계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며 식품 특히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생산 현지 감독자, 공급과정 감시자, 학교 내 모니터링)이 가동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서 수십 명의 동의 댓글이 올라와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여 현실적으로 논의

1)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 대표이자 활동가인 이빈파 선생의 활동 기록을 근거로 한다.

2)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 공공 급식은 학교 밖 단체급식-어린이집, 군대, 병원, 복지시설, 관공서 등에서 제공되며 예산이 투입되는 단체급식을 뜻하며 코로나 상황으로 농산물 소비 진작 일환에서 마련된 꾸러미사업을 정책적으로 임산부까지 확대 보급하면서 공공 급식의 범위를 임산부 꾸러미까지 확장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 모든 공공 급식시스템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해보자며 일정을 잡으니, 진짜로 같은 생각을 하는 78명이—심지어 제주에서까지—서울로 모이게 되었고 함께 행동해보자는 결의와 함께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이하 급식네트) 준비위원회’를 꾸리게 되었다. 이후 활동 실무를 선생이 맡아 홈페이지를 만들고 다양한 소식을 알려내기 시작했다.

선생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곳은 ‘경기 일용직 영양사회’였다. 그들을 만나면서 학교급식의 본질적 문제가 제도와 법에 있었다는 점을 간파하게 되었고 서울의 위탁 급식 또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급식네트 준비위원회 출범 시점에 농민들이 ‘우리 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를 시작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WTO와 식량주권의 위협상황을 알려내고 있었다. 이들과 우연한 계기로 토론회³⁾를 가지면서 학교급식과 우리 농업의 긴밀한 연대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곧바로 급식네트와 농민 진영이 공동 태재급급함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풀어내자면서 법 개정 청원을 위한 단체구성을 고민하였고 이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네트워크방식의 운동⁴⁾으로써 3개월 동안 14회에 거친 법 개정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드디어 2002년 11월 4일을 D-Day로 정하고 법개정청원(청원 대표-이재정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했던 급식네트가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청원 대표에서 빠져야 한다는 모 단체의 주장으로, 급하게 준비위원회가 아닌 정식단체로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창립출범 총회를 열게 되었다(2002년 11월 1일, 서울시의회별관). 그렇게 당당히 급식네트 이름으로 법개정청원을 하였는데, 청원 대표 의원이 청원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상대방 간사(황우여 한나라당)와 함께 “영양사를 교사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상정⁵⁾하여 시민운동진영의 의지를 외면해 버렸다. 이런저런 사실관계를 통해 국회 문을 두드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법개정청원에 합류했던 제 단체들은 개별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것이 ‘지역의 힘’이라는 것에 시각을 교정하고 지역으로 돌아가 역량을 키워내자는 쪽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미 전북에서는 ‘우리 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팀이 출발하기 직전 『전북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모두는 지역에서 조례제정부터 하여 국회법을 바꿔내게 하자는 모종의 합의를 하였고 여기서부터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에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

소위 국회의원으로부터 물먹게 된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에서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정치권을 겨냥한 압박으로 학교급식 관련 우리 농산물 사용 지역 조례를 만들어가려다가 지역 의원들 역시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법을 찾던 중 지방자치법상 주민발의 조례제정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전남에서부터 주민발의 운동을 촉발하여 삼시간에 전국에 들불처럼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시사에 밝은 나주시장(당시 신정훈 시장, 2003년 9월)이 먼저 시장발의 학교

3) 민노당 주관, 2002년 7월 29일, ‘학교급식과 우리 농업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

발제 : 김홍배농협중앙회 조사관, 토론: 우리 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집행위원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한살림, 민노당 / 오마이뉴스 보도

4)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 총연합, 한국농민회 총연합,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연대회의, 기초의회 의원, 제 정당 등 10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체로 구성되었음

5) 2003년 7월 25일 학교급식법을 일부 개정하여 학교 영양사를 교사로 전환하고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급식지원조례를 선포하여 주민발의 조례 운동에 힘을 실었다. 그래서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2003년 9월).

시민운동진영에는 이미 전국단위로 지방자치에 대한 갈망이 제 단체활동의 중심이 되었던바, 2003년 11월 11일 농민의 날을 기념하며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면서 교육부가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식재료지원은 지방예산으로 한다-을 끌어냈다. 이에 힘입어 전국의 주민발의 운동은 더 가열차게 진행되었고 2005년까지 전국의 76% 광역-기초단체에서 주민발의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해 냈다.

사상 초유의 전국 운동, 그것도 주민발의라는 참 민주주의 지방자치 입법체제를 만들어낸 실마리는 학교급식이었다. 학교급식운동은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과 교육 문제를 풀어내고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 희망을 제시하여 전 국민이 동시다발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자는 의지 표명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자.

무상급식운동과 제도 정착

한편, 서울에서는 학교급식도 학교 교육의 하나로 이뤄져야 하는데 김영삼 정부 시절 학부모들의 요구로 초등학교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해 위탁 급식을 도입하였고 초등에서 고등학교 급식으로 중학교를 건너뛴 것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역시 위탁 급식으로 일관하는 정부 정책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있었다. 위탁 급식은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지는 개연성을 피할 수 없었으며 지난 2003년에 서울에서 대형 사고를 낸 것에 이어 2006년 법 개정 전까지 엄청난 사고위험을 안고 있었음을 기억한다.

급식네트가 2003년 서울 양천구의 월촌중학교를 서울 최초 직영 급식학교로 만든 이후 서울 전역은 위탁 급식학교의 직영 전환 운동이 확산되어 소소하게 직영급식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런 중에 위탁 급식을 운영하던 대기업인 CJ에서 대형식중독사고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급기야는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직영원칙의 학교급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기저에는 학교급식법이 교육기본법의 특별법이며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원론적 접근에서 교육을 규명하는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조항(헌법 제31조 제3항)을 근거로 운동적 시야를 무상급식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미 2001년부터 경기도 과천은 경마장 운영에 따른 위해환경개선비목으로 마사회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걷었으며 그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시각을 맞춰 교육평등의 원리에서 모든 지자체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워 전국 운동에 힘을 실게 된다.

운동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곳은 충북 괴산(2007년 4월)이었고 이어 경남 거창군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였다. 그 기반으로 2008년 경남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선언하며 몇 개 학교를 지원하니 2009년 경기교육감(후보 김상곤)이 선거공약으로 무상급식을 제시하며 당선되었다. 하지만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과 시스템 부재로 경기도 무상급식은 선언에 불과한 채로 지연되다가, 2010년 지방선거 후보자들 대부분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화하면서부터 실질적인 무상급식 시대가 열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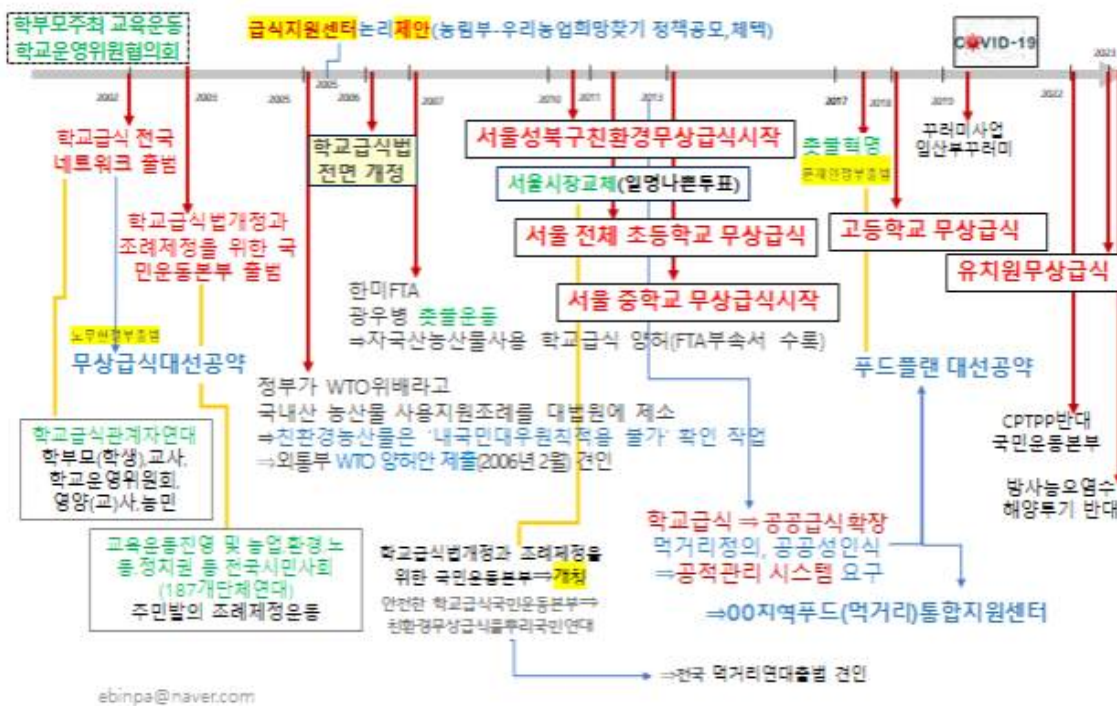
2010년 서울 성북구청장(김영배)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당선된 이래 실행 주체를 물색하다가 관악에서 활동하던 선생을 불렀다. 마침 남편을 귀농시키고 지역을 떠날 준비를 하던 차여서 흔쾌히 성북으로 거처를 옮기고 구청장과 의견을 교환하며 정상적인 정책사업을 시작하였

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주민들의 의식교정이 필요했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권역별로 실시했다. 이어 구청장은 학교장과 영양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하고 행정적으로는 전체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민간위원장-조대엽 고려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이빈파)를 구성하고 구민 대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반대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다수의 동의 찬성으로 바탕으로 초등 1개 학년(공립 6학년) 시범운영을 하였다(2010년 10월 1일). 성북의 무상급식 시도는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아 서울 교육감(당시 박노현)이 2011년부터 서울초등학교 대상 무상급식 시행을 선언하였고 성북구청장은 교육청-시청-구청이 5:3:2로 지원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장(당시 오세훈)은 이런 내용을 극구 반대하면서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제안하였고 그 결과 박원순으로 시장이 교체(2011년 10월 27일)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민주 절차 과정을 보게 된다. 이후 서울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전국화를 끌어냈고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작하여 2018년 이후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친환경 무상급식 원칙의 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급식의 운동사적 변천 과정과 제도 운용을 돌이켜 보며 괄목할 사안은 대한민국의 급식에 있어 ①먹을거리의 헌법적 가치 측면 ②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끌어낸 운동과 민주적 시민사회의 변화 ③학교급식과 공공 급식을 통한 농업환경의 변화 ④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바라보는 급식시스템 등 몇 가지의 영역(분야)에서 검토되는 사회적 가치와 의의를 짚어보게 된다.

학교급식시민운동 연혁(2001년~2023년)



Ⅱ. 급식운동의 역사적 가치

학교급식 지역 조례제정과정은 주민발의 청구에 의한 주민 참여자치의 풀뿌리민주주의가 하나들 정착되어 가는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 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개선”이라는 단일의식으로 전국이 함께 움직이면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학부모-교사-농민-노동자-정당-학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이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법과 제도개선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급식네트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시민운동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거 투쟁 일로의 운동방식과 영역별 단체중심의 운동행태가 아닌, ‘개선을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Positive형 운동’으로서 지역 연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 낸 것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과거 시민단체의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하향식 정책수립과 백화점식의 운동⁶⁾ 형태와는 크게 대비되는 활동으로 시대 흐름을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수평적인 논의구조를 통한 정책생산 및 대안 제시는 물론 주제에 대한 전문가적 역량 및 역할에 대해 책임지는 운동으로 성과를 만들어 온 것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급식 개선 운동은 정부와 정치권에 법 개정 압박과 주민발의 조례제정의 민주주의를 교훈하면서 전국에 확산되면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토록 지방예산을 지원하여 해를 거듭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농업에 친환경 기반이 확보되었다. 2001년 전체농지의 0.2%였던 친환경농업 비중은 급식운동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어 2005년 4.4%, 2007년 9.7%⁷⁾, 2008년 11.9%, 2009년 12.2%, 2010년 14.7%⁸⁾로 최고점을 찍었다. …… 이후 점차 생산 비중이 줄어들어 현재는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자.

학교급식은 분명한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두며,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에 따른 국가의 책무, 공공성, 사회복지와 형평의 혜택이 수반되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것인 만큼 최상의 재료로써 제공되어야 하고 철저한 교육적 시각으로 운영, 공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학교급식 실시 이후 빚어진 사회적 부조리, 교육비리, 끊임없는 식중독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은 결코 안전하지 못했다. 교육으로서의 목적 상실을 초래하는 각종의 비리와 교육 외적 조건들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었다. 특히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 그 관행적 모순을 끌어내고자 주민발의 청구형식의 자치입법을 추진(조례제정)하고 그 힘으로 법을 개정하여 “안전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원칙의 직영, 무상급식”을 주장한 것이다.

지역의 조례는 중요한 풀뿌리 지방자치 입법과정으로 주민발의 형식이 일반화되어 이 땅에 민주주의를 비로소 싹틔우는 성과를 얻어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에 친환경을 비롯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낸 급식비에 추가로 지방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결과 지역 내 친환경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순환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확보하고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찾게 되는 중요한 지방자치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래서 지금 전국은 ‘학교급식

6) 시민단체가 자기 영역을 넘어서 다방면에 걸친 운동을 진행하며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7) 자료출처 : 2008.09.19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도자료

8)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 통계정보

에 친환경 무상'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의 통일된 움직임은 가장 첫째, 잘못된 법규범과 지방제도를 개혁하고 둘째, 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지방자치와 학교 자치를 체계화하면서 안전한 학교급식과 교육의 문제를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내자는 것이었다. 식(食)과 농(農)을 분리할 수 없는 학교급식의 문제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일은 가장 안전하게 식재료를 생산(친환경 농업방식) 하고 지역마다는 소위 “얼굴 있는 농산물로 신뢰와 안전을 담보한 식재료 공급”에 주력한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자-학부모-교사-노동자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한뜻으로 지역자치(주민발의 방식의 조례제정)를 위한 정치세력화 하여 공교육 정상화(학생 중심의 교육과 학교자치)와 올바른 제도(지역자치)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건설(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우리 농업에 희망을!! 위한 **직영-무상-안전한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원칙**)에 힘을 쏟는 것이다. 이미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친환경급식을 전제”하여 예산을 지원하면서 현물공급시스템을 준비, 검토, 마련하였다. 그러면서 지역별 조례제정운동본부는 통합 거버넌스(정보공유네트워크-시민사회 결합 공공 관리) 방식의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설치의 상(像)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를 하나둘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학교급식운동을 진행하면서 시민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전국이 함께 움직이는 ‘연대’와 ‘상생’의 민주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학교급식과 노동문제

초기 급식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급식네트에 문을 두드린 이들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 ‘경기도 일용직 영양사회’였다(2002년 4월). 그들의 요구로 급식네트가 찾아간 곳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필동 한옥마을이었다. 하필 왜 그곳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초청받은 급식네트는 그들과의 연대 활동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이후 여러 차례의 모임을 통해 학교급식의 인력배치 문제와 노동환경, 노동강도, 노동의 범위 등을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었으며 운동에 있어 노동 관련 문제 제기를 삽입했다고 한다.

학교일용직영양사회를 만나면서 놀라웠던 점은 학교 현장에 정규-비정규직의 차별이 있다는 것과 법에 따른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차별성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는 되었지만, 당시 급식운동 진영에서는 ‘직영, 우리 농산물 사용의 급식 시스템’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 노동문제를 크게 부각시킬 여유가 없었다. 이점은 매우 반성해야 할 사안인데, 그나마 변화를 꾀집어낸 것은 전국의 학교급식이 “교육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직영 운영”을 요구하면서 제각기 다른 지역 정책(특히 조리원 배치기준)이 원론적으로 통일되고 합리적인 정책 기초를 갖도록 만들어낸 것이었다. 또, 위탁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특히 서울에서는 위탁업체의 조리원을 직영 전환 시 고용 승계를 전제하도록 한 것도 잘한 일이다.

실제 학교급식은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천몇백 명의 총 학생과 교직원 식사를 같은 시간에 제공하면서 당일 배송된 식재료를 조리하되 점심시간 이전에 완료해야 하므로 조리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식수 인원이 관건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2002년 당시 경기도의 경우 조리원 1인당 식수 인원은 100~170명이었는데, 서울의 경우는 1인당 300~400명의 식수를 감당하며 오전 8시부터 11시(11시 반)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몇 가지의 음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거기서부터 식재료 사용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과 구조적인 노동문제를 알게 되면서 지속해서 조리원 배치기준 변경을 요구하여 현재는 100명 안팎의 식수를 담당하는 정도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다. 현재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서 이런 문제는 크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학교급식 운동사에서 얻어진 큰 사회적 변혁임은 분명하다.

한편, 조리원들은 감당하기 힘든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파트제 근무 등으로 그들 자체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준이 못됨을 한탄하고 있었다. 마침 학교 현장에서 급식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던 급식네트가 이들 조리원의 이야기를 듣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들 스스로 움직이게 된 결과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2008년 서울 관악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다.

글을 마치며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앞서 언급했던 대로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지속 가능 세상을 고려하며 미래사회도 잘 먹고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자며 먹을거리는 농업과 분리될 수 없음을 모두가 직접 인지하고 행동했음을 자랑하게 한다. 시간이 흘러 친환경 무상급식은 제도로써 정착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은 노동과 사회문제라는 점이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

실제 급식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면서 모든 시각을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실제 급식을 만드는 이들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해 왔다. 말로는 감사와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이야기해 왔음에도 어찌 급식을 만드는 현장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일들을 모르쇠 했는지 정말 깊은 사죄의 마음으로 답답하다.

노동자 당사자의 시각에서 운동을 전개해 왔더라면 오늘같이 조리원들의 폐암, 근골격 손상 등 건강 문제가 사회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난해 경기도에서처럼 영양교사가 갑자기 쓰러져 이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과거와는 다르게 정책담당이 바뀌면서 조리실 안전 환경문제를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이 각자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이상한 학교 안전 관리체계도 아직 문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급식을 제공 받으려면 진짜 만드는 이들 또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문제라는 것을 왜 놓쳤을까...

우리가 아는 급식실의 사건 사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 학부모로서 직접 개입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모든 급식노동자에게 용서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다시 처음처럼, 농민과 함께했듯 노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발제 2. 폐암 예방대책과 치료지원 방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

폐암 예방대책과 치료지원 방안

2023.9.1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1

발표 내용

1. 기존 보건관리 수단의 제한점
2. 현장 관리와 변화 : 환기 관리, 메뉴 관리, 노동강도 완화
3. 치료지원 : 복귀 과정 지원, 의심소견자 지원
4. 결론 및 과제

2

기존 보건관리 수단의 제한점

3

가장 대표적인 보건관리 수단 : 작업환경측정

- 모든 유해물질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아님.
- 적절한 측정 방법이 있어야 하고, 목표가 되는 질병 예방 기준이 필요함.
- 조리흡은 단일 물질이 아니라 분진, 오일미스트, 가스 등 여러 물질의 혼합물.
- 원재료 성분, 조리 기름, 조리 온도, 조리 방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조리흡에 대한 성분을 파악하여 정량화하는 것은 아직 논쟁적
- 작업환경 관리가 더 중요하다.

4

가장 대표적인 보건관리 수단 : 특수건강진단

- 폐암 국가암검진 : 54세~74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 소유자, 2년마다 저선량 CT
- 폐암은 아직 고위험군 이외에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조기발견의 장점이 크지 않음.

대만에서 LDCT 검진 도입 후 여성의 초기(0~1기) 폐암 발생률은 2004년부터 2018년 까지 인구 10만 명당 2.3명에서 14.4명으로 6배 이상 증가.

말기(2~4기) 폐암 발생률은 변화가 없어서, 100,000명당 18.7명에서 19.3명으로 증가.

사망률은 변화 없었고, 5년 생존율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 100,000건당 12.1건의 초기 암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말기 암의 동반 감소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로 발견된 모든 암은 과잉 진단.

JAMA Intern Med. 2022;182(3):283-290

- 저선량이라도 방사선 노출, 개인적/사회적 비용, 스트레스나 조기 은퇴 등
- 교육부 : 검진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2023년 중 발표 예정? 진행은?
- 건강진단 범위를 너무 늘리는 것보다 작업환경 관리가 더 중요하다.

5

현장 관리와 변화가 중요하다

6

환기 관리

- 2021.12 산업안전공단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93개 학교 중 환기시설 유속이 양호한 곳이 하나도 없었음. (개구면 0.5m/sec 이상)
- 2022년 전남도교육청 환기시설 유속 평가 결과 2648개 후드 중 2,293개(86.5%)가 부적합

교육부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환기설비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교당 1억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
 2023.3. 현재,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 완료 예정이고 나머지 11개 교육청도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안내서(고용부, 이하 '안내서') 현장 적용을 위해 관계기관 전담팀(TF) 논의와 개선 사례 공유를 통해 시도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준을 보완

교육부, 2023. 3.15 보도자료

- 표준 모델과 개선 완료 학교에 대한 평가 필요
- 개별 학교에 개선이 맡겨지지 않도록 해야 함.

7

특성화고 실습실 사례 (2018, 서울시교육청)

- 2016년 실태조사 후 학교별 개선 →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아쉬운 경우가 많음
- 표준 모델 보급의 중요성 : 개선시 가이드라인, 학교별 개선이 아니라 교육청별 개선, 설계부터 고려
- 사용 중 관리의 중요성 : 관리 비용, 방법, 담당자



8

메뉴 관리

- 유해물질의 공학적 관리 중 가장 좋은 것은 제거.
-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안

2 학교급식 조리방법 및 급식환경 개선

① 조리방법·식단 개선 및 현장 안착 지원

- **조리방법 개선** 기름을 사용하여 고온으로 가열하는 요리(튀김·부침 등)는 쾌적한 조리환경 조성을 위해 “오븐 사용” 전환 유도
 - ※ 초중고 오븐 설치율(22): 97% / 요리별 오븐 사용률(251교 조사): 구이 92.5% 부침 34.5% 튀김 33.8%
 - * 학교의 **오븐사용 실태분석** 및 **사용 확대 방안** 마련(‘23.상)
- **급식식단 개선** 기름 사용 가열요리의 종류, 조리법 등을 분석하여 “대체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23.하), 튀김류 최소화(주 2회 이하)
 - * (예) ‘튀김요리’를 ‘찜·조림 및 오븐요리’ 등으로 대체
- **현장안착 지원** 학교급식에서 오븐요리를 쉽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오븐 활용법 교육영상” 제작·보급 및 종사자 연수 실시(‘~’23)
 - * 오븐 작동법, 요리별 조리방법, 요리시연,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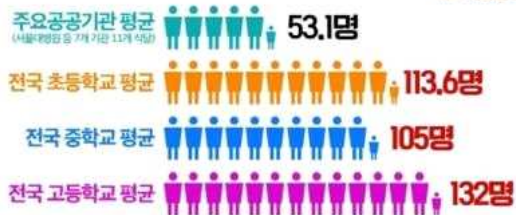
9

노동강도 완화

- 집단급식 중 학교급식에서 1인당 식수 인원이 높고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 널리 알려짐
- 노동강도가 높으면 호흡수 증가, 피부 노출 증가 등으로 유해물질 노출 높아짐.
- 인력이 부족할수록 튀김 등 조리흠 노출이 많은 메뉴 노출 증가
- 대량 조리시 조리흠 peak 농도가 매우 높아짐.

주요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급식인원 비교

자료 : 김중훈 국회의원



주요공공기관과 비교해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가 2배 이상 높다
 주요공공기관 :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기초과학연구원
 학교 : 전국 17개 시도 10,512교(초등학교 5,767·중학교 2,444·고등학교 2,301)

10

높은 노동강도와 폐암 산재

- (다른 질병으로) 2월부터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학교가 너무 바쁘니까, 방학 기다리다가, 여름 방학 때 외래를 가니 검사가 9월로 잡혀서, 다시 겨울방학에 가니 그 사이에 폐암이 x-ray 에서 발견될 정도로 커졌다.
- 1기에 발견되어 수술하고 바로 산재를 했는데, 산재 요양 중 코로나로 조리실무사들이 다수 빠지게 되자, 안타깝워서 그냥 출근했다. 대타도 구할 수 없었고... 며칠 일하는데, 교육청에서 나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쉬었다.
- 3기였는데 수술 후 2년간 쉬었다. (산재는 이후에 진행) 힘든 항암치료 등은 지났지만, 노동강도가 너무 높아서 복귀가 두렵다.

2023.8 인터뷰, 광주지역 산재 요양자

11

노동강도 평가 (2014, 강원도 교육청)

- 상대심박수(Relative heart rate, RHR) : 육체노동의 작업부하(작업강도)를 반영하는 지표
- $RHR = (HR_{work} - HR_{rest}) \div (HR_{max} - HR_{rest}) \times 100 (\%)$
(HR_{work} : 작업 중 평균심박수, HR_{max} : 최대심박수, HR_{rest} : 안정시 심박수)

RHR(%)	적정근무시간
68.0	1 시간
53.0	2 시간
39.0	4 시간
27.5	6 시간
24.5	8 시간
22.0	9 시간
20.0	10 시간
18.0	11 시간
16.0	12 시간

12

노동강도 평가

평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평가 대상자			
	A	B	C	D
연령	53	49	56	44
키(cm)	156	155	159	162
몸무게(kg)	72	58	51	58
체질량지수(kg/m ²)	29.6	24.1	20.2	22.1
흡연	비흡연	비흡연	비흡연	비흡연
음주 횟수	월 2-3회	주 1-2회	거의 안함	월 2-3회
음주량	소주 반병	소주 반병	소주 반병	소주 1.5병
운동	거의 안함	거의 안함	거의 안함	가끔 걷기
주관적 건강상태	보통	좋은 편	좋은 편	좋은 편

13

노동강도 평가

평가 대상자의 업무 특성

구분	평가 대상자			
	A	B	C	D
하루 근무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휴식시간	거의 없음	거의 없음	거의 없음	거의 없음
점심시간	20분 내외	20분 내외	20분 내외	20분 내외
하루 중 걷는 시간	80%	80%	80%	80%
업무의 강도	힘듦	매우 힘들	매우 힘들	약간 힘들
적정 업무량	60%	70%	70%	80%
육체적 소진	항상 있다	종종 있다	항상 있다	종종 있다
정신적 소진	종종 있다	종종 있다	간혹 있다	-

14

노동강도 평가

노동강도 평가 결과

구분	평가 대상자			
	A	B	C	D
최대심박수(/분)	167	171	164	176
안정시 심박수(/분)	78	78	70	68
작업 중 평균심박수(/분)	104	103	94	92
상대심박수(%)	29.2	26.9	25.5	22.2
적정근무시간(시간)	6.4	7.2	7.6	9.0
과로지수 ¹⁾	1.25	1.11	1.05	0.89

¹⁾과로지수 : 실근무시간을 적정근무시간으로 나눈 값

배치 기준 변화(2015→ 2022, 경기도)

구분	급식 구분	급별	급식인원수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단위:명)											
			50명 이하	51 ~ 100	101 ~ 300	301 ~ 500	501 ~ 650	651 ~ 800	801 ~ 1,000	1,001 ~ 1,200	1,201 ~ 1,400	1,401 ~ 1,600	1,601 ~ 2,600	2,601명 이상
배치 기준	중식	초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급식인원 200명 초과 과시 마다 1인을 추가	※급식인원 300명 초과 시마다 1인 인을 추가
		중	1인	2인	3인	4인	5~6인	7인	8인	9인	10인	11인		
		고	1인	2인	3인	4인	5~6인	7인	8인	9인	10~11인	12인		
							7~8인	9인	10인	11~12인	13인			

※ 교육공무직원(조리사) 및 일반직 조리사 포함

③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 **근무여건 개선** 시도별 적정 배치기준 시행 및 인력 배치, 휴게실·샤워장 등 휴식환경 개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확대
 - **인력 지원 강화** 질병 및 감염병 등 긴급한 휴가사용 등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체계 마련* 및 퇴직·채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운영
- * 교육(지원)청 단위 대체인력풀 구성·운영 이외에도 상황에 맞게 교육(지원)청에 전담반 구성 및 거점학교 배치지원, 유관기관(지자체 센터 등) 연계 등 체계 마련

- 배치기준 준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학교 개입
- 배치기준에 맞지만 1인당 급식인원인 지나치게 높은 학교 등에 대해 먼저 대책 마련
- 대체인력 포함한 운영 : 강원도 교육청 사례(거점학교에 추가 인력 확보)
- 배치기준 변경 : 교육청마다 차이가 큰데 일관성 높이고, 전체적으로 배치기준 낮출 필요성
- 연차, 병가 등을 고려한 배치기준 필요

17

치료 지원

18

복귀 과정 지원

- 노동강도 고려한 복귀 계획 필요

“(1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6일이었는데, 이 날짜 이외는 모두 취업 치료 통보. 복직하지 않고 있음” (경기)
“(1기) 수술 후 2022. 3. 27. 퇴원하였는데 공단은 22. 4. 1.부터 취업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함. 이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실 통원일 3일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결정” (서울)
(3기, 당시 산재 아니었음) 3개월 쉬고 근무하는데, 식은 땀이 나고, 배식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 경험. 오후에는 녹초가 되어 일하기 힘들었다. 복대차고 일함 (광주)

- 폐암이라서 폐기능 검사 결과로 취업 가능 여부 결정
- 원직복직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실의 노동강도 반영한 휴업 기간 결정이 필요
- 복귀 시 학교에 인력 지원 필요

복귀할 때 작은 학교로 보내주기도 한다. 아예 배치 기준이 낮아져서, 다시 돌아와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모두 건강한 경우에도 힘든 메뉴하는 날은 정말 바쁘고 힘들어서 사고 위험 높아진다(광주)

19

의심 소견자 지원

- 2023.2.28 기준 양성 결절 6,239명, 경계성 결절 534 명
→ 추적 검사 관련된 지원이 교육청마다 상이.
→ 안정적으로 검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병가/ 연차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노동강도/ 인력배치가 여기서도 핵심적 문제
- 산재 요양자, 의심소견자 모두에 대해서 교육, 심리지원 등 필요 (부산시 교육청)
→ 산재 승인의 의미, 다양한 급여 등
→ 폐암 자체에 대한 설명과 이해 등

20

결론

21

발표 내용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등 기존 보건관리 수단으로는 한계가 많음
환기 관리, 메뉴 관리 등 현장 관리가 중요

노동강도 완화, 인력 배치기준 재설정과 인력 확보

→ 폐암 발생과 휴업 치료, 복귀와 추적 관찰 등 폐암 산재 문제 전반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산재 휴업 기간과 복귀 과정 문제

→ 학교급식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님.

→ 아픈 노동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

22

감사합니다!

minchoi2015@gmail.com, kilsh.or.kr

23

발제 3.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 경남 개선사례 및 개선 방향

창원대학교 하현철 교수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경남 개선사례 및 개선 방향

2023. 08

 VENTECH CORP.

TEL. 055-289-7587 / FAX. 055-287-8288

e-mail. cfdace@hanmail.net / ventech_ha@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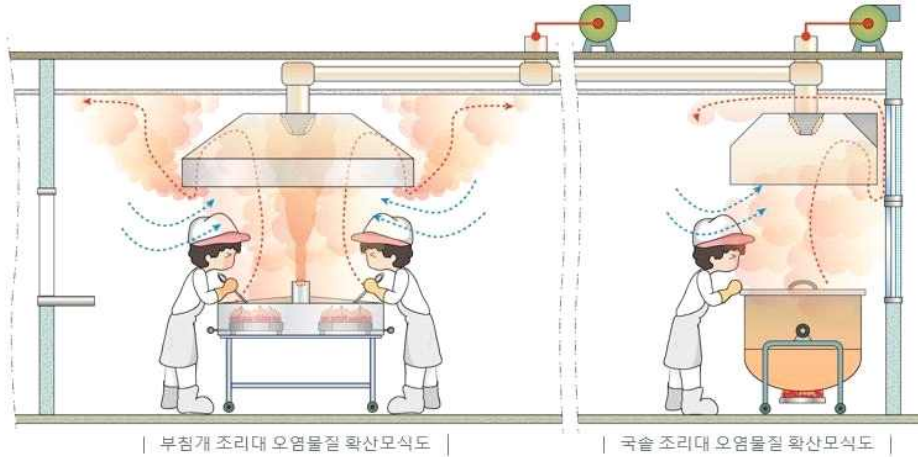
https://blog.naver.com/ventech_ha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F503(스마트업타워, 팔용동)

I. 급식실 환기란?

1. 급식실 환기란?

- 효율적인 환기란?
: 오염물질로 부터 작업자 보호
- 효율적인 후드란?
: 적절한 형태 및 적절한 유량(환기량)



2

1) 교육부 자료

5) 환기시설

열을 사용하는 조리기구의 상부에 설치하여 작업 시 조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증기, 가스, 불쾌한 냄새, 연기, 먼지 등이 조리장 내부에 퍼지지 않고 외부로 잘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리장 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환기시설 또는 공조시설을 갖춘다.

※ 가스(일산화탄소 포함) 유출 등을 감지할 수 있는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공기의 흐름은 청결적업구역에서 일반적업구역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특히, 조리실과 상온청고, 전처리실, 식기세척실에 적절한 흡인력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증기·열·연기 등이 많이 발생하는 조리기구 위에 급·배기 기능이 있는 후드를 설치한다. 외부에 개방된 흡·배기구 등에는 위생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충·방서 시설을 설치한다.

● 후드(hood)

- 후드의 형태는 열기기보다 사방 15cm 이상 크게 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제작하되 적정 각도(3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후드는 표면에 형성된 응축수, 기름 등의 이물질이 조리기구 내부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제작·설치한다.
- 후드의 등체 및 테두리에 통풍을 만들어 흘러내린 물이 바닥 또는 조리기구 위에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튀김기, 부침기 등 기름을 많이 튀기는 조리기구 위에 설치하는 후드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기름받이 및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를 설치한다.



후드 형태 및 유량에 대한 기준 없음!!!!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 덕트(duct)

- 덕트는 조리장 내의 증기 등 유해물질을 충분히 바깥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크기와 흡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덕트와 배기후드의 연결 시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동 개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덕트의 모양은 각형이나 신축형보다는 원통형이 배기 효율성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 후드와 연결되는 덕트는 천장공사 시공 전에 설치하여 기밀적 천장 아래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덕트는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재질로 하되, 청소와 배기 배출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
- 급기덕트는 필터를 통해 급기 되도록 하고, 결로 방지를 위해 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 향후 급식소 설계 시에는 열 발생원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가지 덕트가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덕트 1개로 국솥, 튀김솥, 오븐기, 부침기 등 여러 개의 가지 덕트를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3

2) 후드 형태의 중요성

부침개 조리작업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조리흠

126 m³/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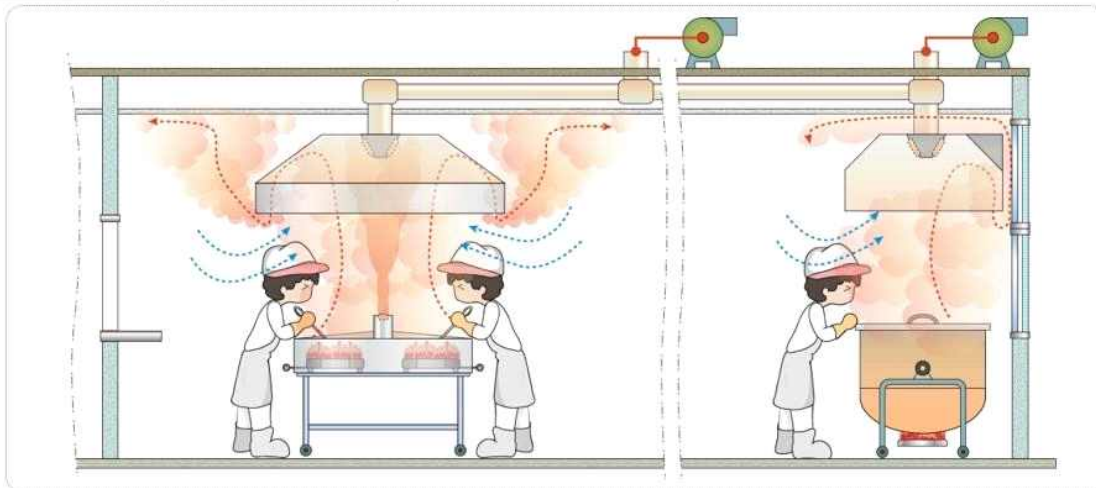
47 m³/min



4

3) 조리 작업시 흠 노출

조리흠 측정결과 (개/L)			구분	CO 측정결과 (ppm)	CO ₂ 측정결과 (ppm)
외부	평균	115,712			
내부	MAX	143,470	MAX	1	504
	평균	120,836	평균	0,6	476
	MIN	107,348	MIN	0,4	451
부침개 조리대	376,658				



5

조리 흠 노출 실태

학교명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평균		
환기 유 량(m^3 /min)	설계 유량 (IV 매뉴얼 기준)	112	155	145	131	155	150	155	126	155	89		
	송풍기 정격 유량	300	확인 불가	253/179	295(전체)	확인불가	193*2(전 체)	296(전체)	확인불가	330(전체)	250(전체)		
	후드 측정 유량	47	21	126	33	38	24	126	7	54	17		
조리흠 측정결과 (개사)	외부	115,712	119,748	63,625	272,347	22,608	125,754	71,084	64,605	130,607	28,333	101,442	
	내부	MAX	143,470	119,748	101,266	211,016	71,050	140,354	206,387	188,604	160,096	317,184	165,918
		평균	120,836	96,413	86,290	147,889	57,655	135,217	104,452	88,757	143,366	71,525	105,240
		MIN	107,348	87,254	72,015	67,123	37,465	131,581	71,284	39,092	131,943	22,242	76,735
	조리대 상부 (작업자 호흡영역)	376,658	341,059	397,205	-	157,417	-	225,813	-	893,595	80,820	353,224	

☞ 조리 작업자 호흡 영역의 조리흠 농도는 환기 효과와 상관없음

6

4) 배기량 부족으로 기류 유출

- 부침개 조리대의 배기량은 $47 m^3/min$
- 부침개 조리대 상부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
- 조리흠이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하여 상승하기에 작업자의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 부침개 조리과정에서는 작업특성상 배기량이 충분하다고 하여도 조리원은 오염물질에 노출됨



부침개 조리대 연기실험 - 1



부침개 조리대 연기실험 - 2



5) 산업환기매뉴얼 - 30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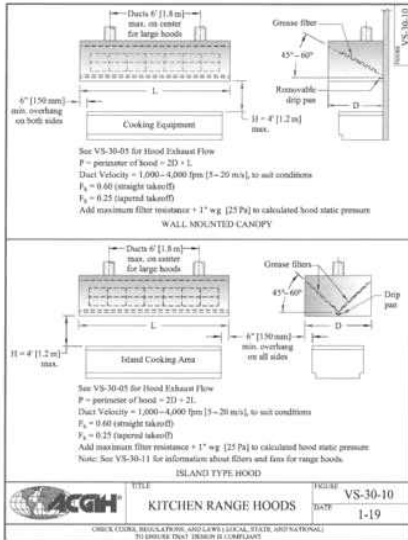


Table: Type of Kitchen Hood, with Linear ft (m) to Linear meter (m) of Hood Length

Kitchen Appliance Duty	Wall Mounted Canopy		Island		Back Shelf	
	Single	Double Per Side	Single	Double Per Side	Single	Double Per Side
Extra Heavy Duty	550 [0.81]	700 [1.09]	550 [0.81]	NA	NA	NA
Heavy Duty	400 [0.62]	400 [0.62]	400 [0.62]	400 [0.62]	400 [0.62]	400 [0.62]
Medium Duty	300 [0.47]	300 [0.47]	300 [0.47]	300 [0.47]	300 [0.47]	300 [0.47]
Light Duty	200 [0.31]	200 [0.31]	200 [0.31]	200 [0.31]	200 [0.31]	200 [0.31]
Type 2	200 [0.31]	400 [0.62]	250 [0.39]	250 [0.39]	250 [0.39]	250 [0.39]

Hood exhaust flow rates vary on account of the hood style, the amount of overhang, the position of side panels, the type of cooking, the distance from the cooking surface and the hood that is being cooked. Hot cooking surfaces create thermal plumes that have an upward velocity that can approach 150 fpm (0.75 m/s). The hood airflow is determined by the plume velocity, with safety factors added for the style of hood, cross air currents, and flame-ups. The plume velocities are categorized by a duty of cooking appliance.

- Extra heavy duty - solid burning equipment up to 700 F (317 C)
- Heavy duty - upright broilers, charbroilers and woks up to 600 F (316 C)
- Medium duty - large kettles, ranges, griddles and fryers up to 400 F (204 C)
- Light duty - ovens, steamers and small kettles up to 400 F (204 C)

The exhaust rate of a hood is based on the equipment under the hood. The highest duty appliance determines the duty for the hood. The kitchen range hoods shown in VS-30-10 and VS-30-11 utilize these duty categories to identify the exhaust airflow rate.

TITLE	VS-30-05
KITCHEN HOOD EXHAUST FLOW RATES	DATE 1-19



측면 막음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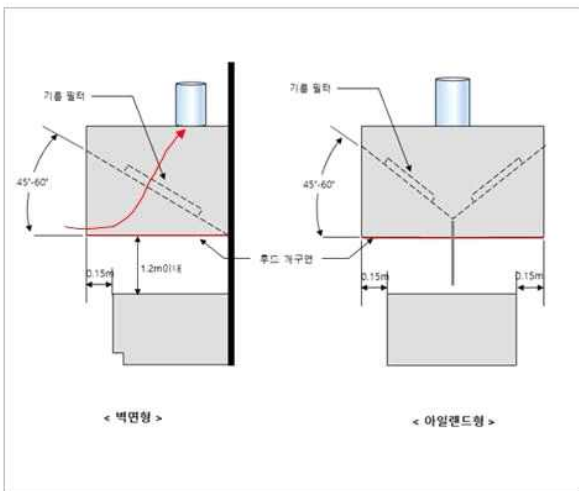




III. 급식실 환기 개선의 빛

1. 급식실 환기 가이드 - 호흡영역 보호

**** 후드 유입 기류 방향을 바꾸자! ****



(2) 성능
 가) 후드의 형식과 후드 면풍속은 조리 기구별 조리용 발생을 고려하여 <표 2>와 같이 0.5~0.7m/s 이상으로 한다.

<표 2> 조리기구별 개구면 풍속

구분	부침기 가스렌지 튀김술 세척기 입출구	오븐 밥솥 국솥 기타 가스 처리 등
후드 면풍속	0.7 m/s 이상	0.5 m/s 이상
	필터를 설치할 경우 필터 면풍속은 1.5m/s 이하	

2. 경남 교육청 급식실 환기 개선 추진 방향

항목	내용	2022년				2023년		추진 방법 및 주체		
		9	10	11	12	1	2	방법	용역기관	설계기관
학교 급식 개선 사업	급식실 환기 방안 기초 설계							- 각 학교별 조리실 배치 및 국소배기 설계		0
	개선 대상 학교 환기 실태 조사							- 환기 효율 평가 및 공기질 측정	0	
	전체환기 설계							- 기초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환기 모델링 및 설계	0	
	급식실 환기 설계 협의							- 30개 학교 방문하여 설계 적정성 평가 및 개선 방안 협의	0	0
	설계 확정							- 입찰을 위한 실시 설계		0
	개선 공사 실시									
	설치 후 효율 평가 (기후 검토 및 감리)							- 일정 향후 협의	0	
	설계 및 설치 후 효율 평가 방법 매뉴얼 작성								0	

3. 전쟁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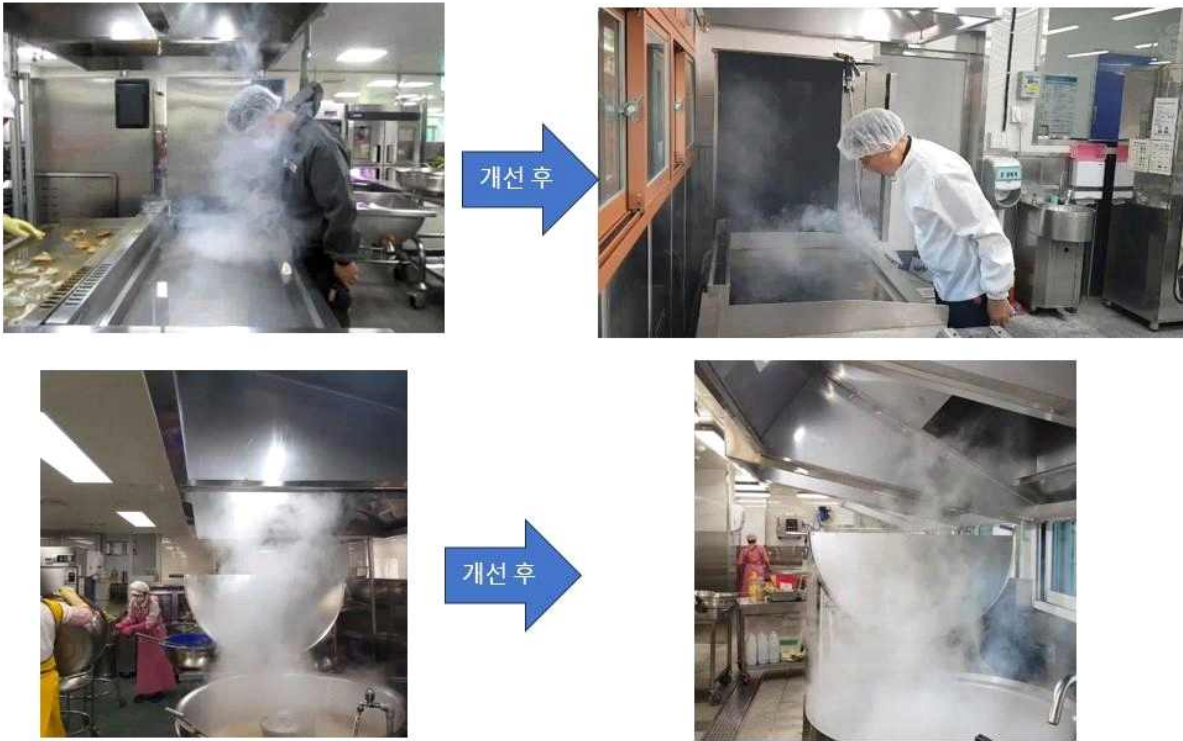
환기 설계

- 30년간 아무도 관심없음
- 환기 가이드에 대한 이해!! 할 의지없음
- 우리 업체가 지금까지 설계한 급식실이 몇 갠데 외부인이 만든 기준을 왜 지켜!!!
- 설계 금액이 낮아 현장 방문 최소화

환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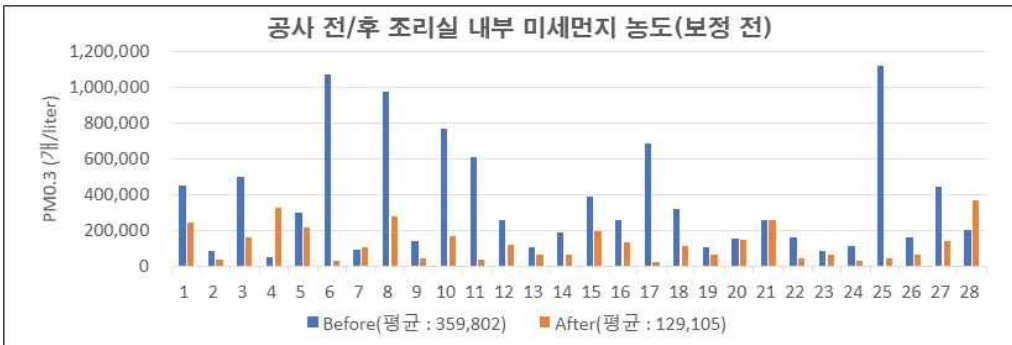
- 도면 이해 안됨
- 이미 만들어진 후드를 그대로 설치
- 환기량의 개념 부재

4. 전쟁의 결과 - 급식실 환기 개선의 효과 (경남 28개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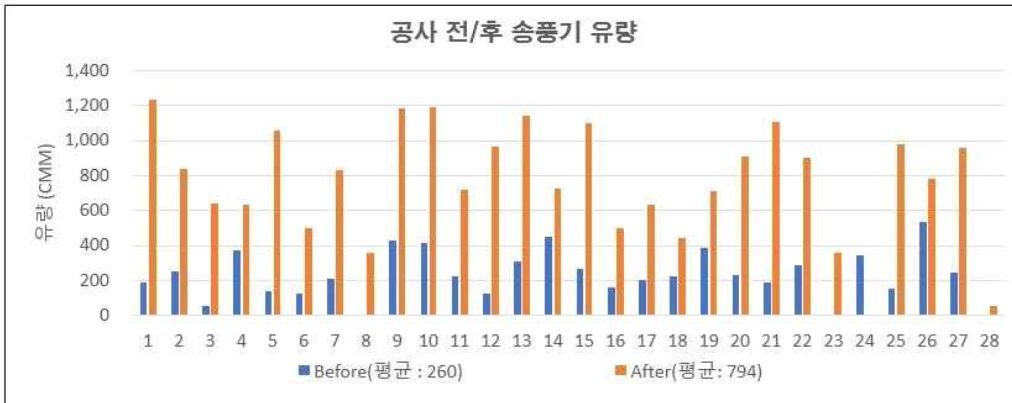


14

(1) 급식실 환기 개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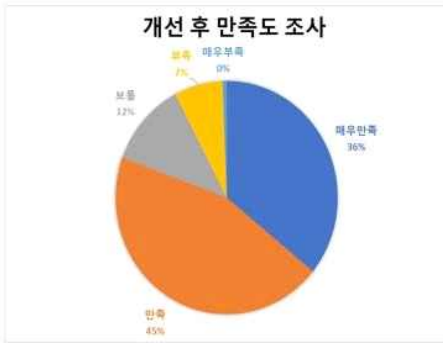
미세먼지
농도 1/20로
감소



환기량: 3배
증가

15

(2) 급식실 환기 개선 설문조사



1차 설문조사

환기시설 만족도

2023년 2월

21개교

영양사 및 조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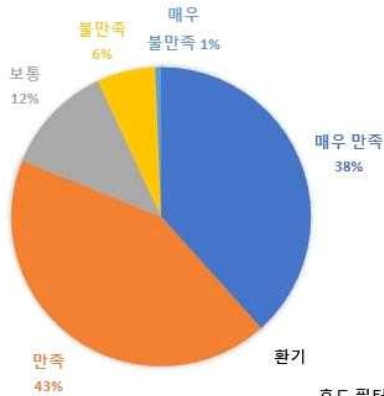
응답인원 170명

- 추위문제
- 공사 마무리 작업 부실
- 시스템 사용 설명 부족
- 소음문제
- 청소할 곳이 많이 늘어남
- 연 2회 정도 청소대행 필요
- 후드 높이가 너무 높아 청소 어려움
- 후드 높아서 후드 필터 탈부착 너무 어려움
- 후드 필터 청소량이 너무 많음
- 출입문 여닫기 힘들
- 후드 필터에 섬유필터 사용 필요
- 후드 스위치와 후드 전등 스위치가 떨어져 있어 불편함
- 설계 진행시 설계 업체와 학교 담당자들간의 협의 부족
- 조리대 칸막이 불편하고, 열에 의해 변형 일어남
- 조리원 휴게실에 설치된 분전함으로 부터 소음 심함

16

(2) 급식실 환기 개선 설문조사

환기



2023년 6월 말

28개교

영양사 및 조리원

응답인원 159명

- ### 환기
- 후드 필터 청소시 필터 탈부착 어렵고 위험함
 - 후드 소음 문제
 - 조리사 휴게공간에 설치된 분전함 소음
 - 조리대 칸막이 너무 불편함
 - 조리대 칸막이로 인해 열기가 온전히 조리작업자에게 전달됨
 - 후드 너무 높아 청소 힘들
 - 후드 필터 편하게 세척하는 방법 찾아야 됨

냉방



냉난방

- 식기세척기 쪽 냉방 약함
- 디퓨저 결로 생김
- 자바라 움직임 자유롭지 못해 방향조절 어려움
- 설계 단계에서 긴밀한 토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많음
- 환기용 덕트가 너무 커서 원하는 곳에 냉방설비를 설치할 수 없었음
- 냉방 약함

17

Ⅲ.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을 위해..

1. 효과적인 급식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1) 설계 및 도면 작성 - 정보 부족

설계도면

DRAWING NAME	
② 가스렌지, 부침기 이중배기후드	
종류	215-204 1.25
제작일/규격	215-204 1.25
도면일	215-204 1.25
#	215-204 1.25
도	215-204 1.25
비	215-204 1.25
비	215-204 1.25

○ 환 도
상기소 부속(가스 배기구)는 설치할지 여부, 종류, 용량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함

○ 구 조
1) 환로 형태는 사용용으로 한다
2) 환로는 57304를 사용한다
3) 후드 및 배기구는 방화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4) 환로를 설치할 때 배기구 위치와 직통을 확인한다
5) 환로에 환풍기, 환풍기류는 반드시 설치하고 방화배 배기구로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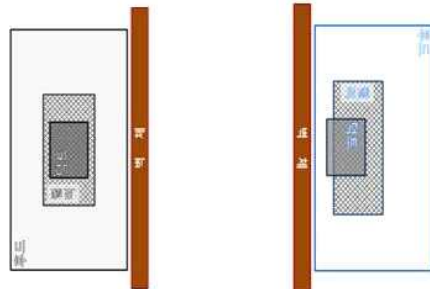
설계 도면으로는 공사 못함

- 후드 정면도
- 필터 평면도
- 덕트 평면도
- 부침기, 렌지&후드 배치 평면도



후드 보고 다시 그린 것

2) 설치 불량 - 설계 도면 정보 부족의 결과



20

3) 설계 단계 사전 검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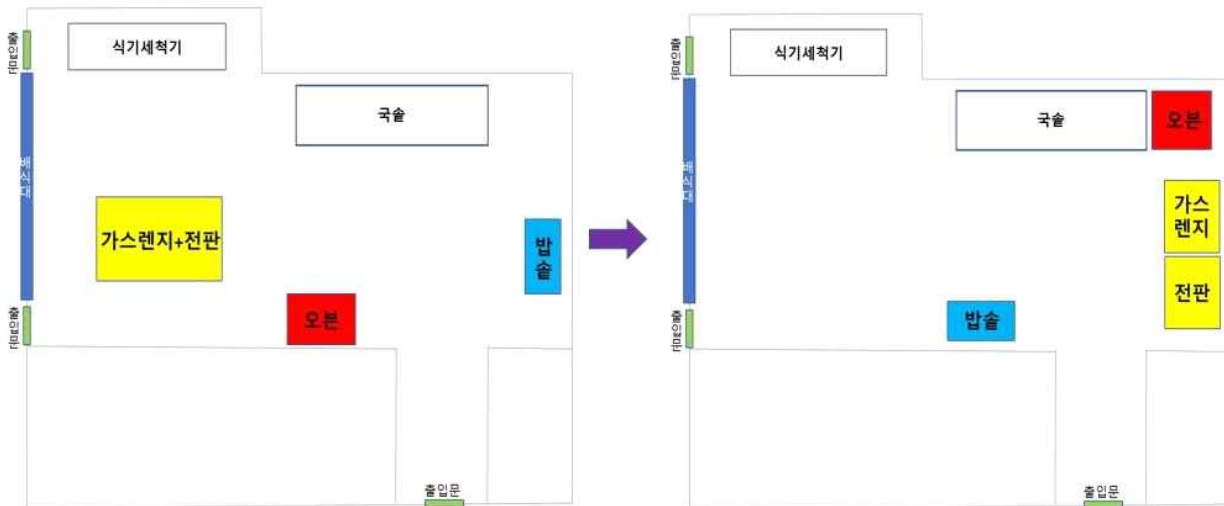
구분	해석 모델	해석 조건	
모델		외기 온도	33℃
		식당 급기 온도	31℃
		국송 및 조리대 발열량	15,000w
		오염물질	- 현지 상부 CO 1,000 ppm
		배기권	- 계발 급기량: 5m ³ /min - 급기 온도: 25℃ - 급기 유 구동
비고	• 측면 격벽 설치 필요		
해석 결과	온도 분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측상태의 경우 배식대 및 송입장 거동으로 인해 고온이 확산됨 • 따라서, 측면 격벽 설치 필요 • 배이권 급기온도 25℃에 의해 조리대 내부 온도는 30℃ 정도로 유지 가능함(여기보다 온도 2℃ 정도 낮음) • 거동 흐름이 많을수록 해당에 조리실 환경은 개선효과 기대됨 		

- 조리기구 배치의 적정성
- 급배기 불균형의 의한 방해기류 영향
- 고온 영역 발생 여부

21

(1) 조리기구 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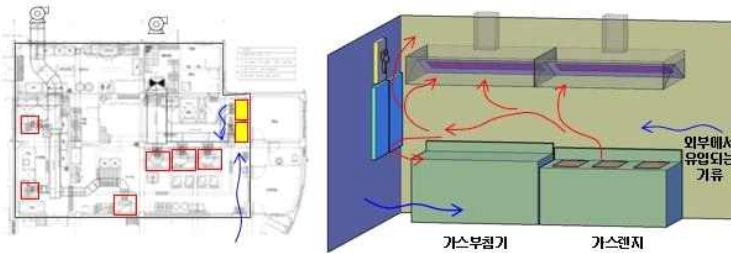
오염 유발 조리기구와 배식대를 멀리



22

(2) 방해기류의 영향

- 양쪽 측면에 격벽이 없어 방해기류에 취약함
- 특히 조리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기류와 주변 선풍기 및 에어컨 기류가 방해기류로써 작용함(조리실 급기 부족 시 이러한 현상 심화)
- 창가쪽 상부 환기용 Wall Fan이 설치(현재 미가동)되어 있으나 후드 옆에 위치하여 후드 배기 효율 저하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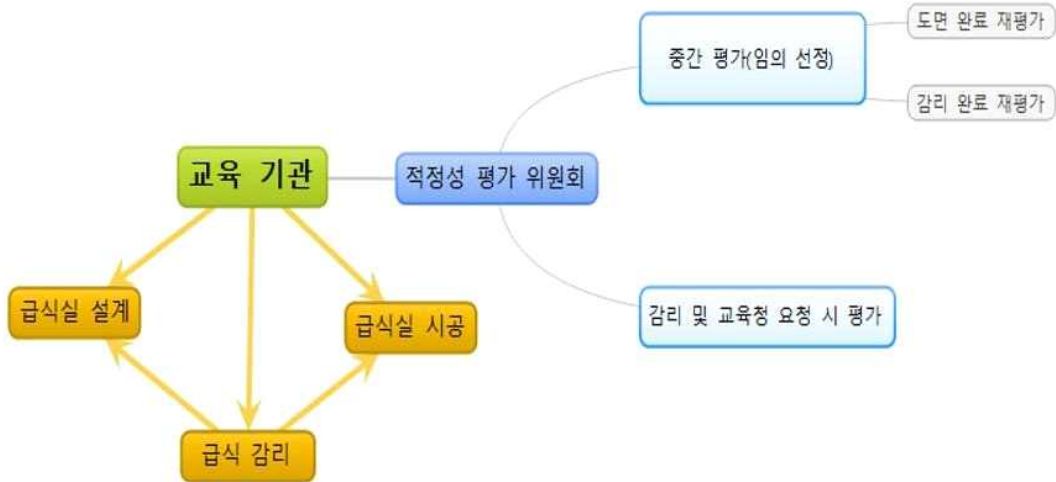
가스렌지, 가스부침기 후드 연기기류 테스트



23

2.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 감리제도 도입

학교 급식실의 효율적인 환기 개선을 위한 설계, 설치 및 시공 후 효율 평가에 대한 감리 제도 도입



26

설계 및 시공팀 교육(안)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09:40	접수		
10:00~11:00	조리훈의 건강 영향	송풍기 정압 설계 방법	설치 후 효율 평가 방법(후드 기류 평가)
11:10~12:00	고용노동부 가이드 설명		
12:00~13:0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13:00~14:00	시범 학교 진행 과정과 문제점	송풍기 정압 설계 실습	전체 정리 및 토론
14:10~16:00	학교 급식실 후드 형태 및 환기량 산정 방법		
16:10~18:00	급식실 입지 조건에 따른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설계 방법	설치 후 효율 평가 방법(후드 기류 평가)	

27

감리 교육(안)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9:40	접수				
10:00~11:00	조리훈의 건강 영향	학교 급식실 개선 방안(도면) 검토 방법 및 검토 시 주의할 점	학교 급식실 후드 형태 및 환기량 산정 실습	송풍기 정압 설계 방법	설치 후 효율 평가 실습 (후드 및 송풍기 효율 평가, 급식실 내부 기류 평가 등) 실습
11:10~12:00	고용노동부 가이드 설명				
12:00~13:0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13:00~14:00	시범 학교 진행 과정과 문제점	학교 급식실 개선 방안(도면) 검토 방법 실습	급기 풍량의 적정성 평가 방법	송풍기 정압 설계 실습	전체 실습
14:10~16:00					
16:10~18:00	환기 기본 이론	학교 급식실 후드 형태 및 환기량 산정 방법	급기 풍량의 적정성 평가 실습	설치 후 효율 평가 방법(후드 및 송풍기 효율 평가, 급식실 내부 기류 평가 등)	

28



내가 급식실 조리실원이라면...

내가 일하는 급식실의 환경 수준은?

감사합니다.

발제 4. 학교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 관련 제도개선방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1. 들어가며

학교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한 폐 검진 결과 32.4%에 해당하는 1만 3,653명이 이상 소견을 보였고, 폐암 확진과 폐암 의심자가 341명에 달한다는 결과는 큰 충격을 주었다. 아이들이 먹을 밥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고열에 노출되는 환경을 묵묵히 견뎌왔던 노동자들의 몸으로 확인된 급식실의 환경은 관련 법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담지 않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의 ‘안전’에는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이 포함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제반 절차가 학교 급식실에도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폐암이나 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을 마친 후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복귀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 관련 업무의 특성상 8시간 일하면서 1시간의 휴게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관하여도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 내용을 담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도 포함돼있지 않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2. 개정방향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법률 제18639호 [2022. 6. 29. 시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여하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제2조(정의)

<p>음과 같다.</p> <p>1.~ 3. (생략)</p> <p><신 설></p>	<p>1.~ 3. (현행과 같음)</p> <p>4. “<u>학교급식 종사자</u>”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제7조에 따른 영양교사 및 조리사</p> <p>나. 영양사,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근무장소로 하는 사람</p>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p> <p>--- <u>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u> ---</p> <p>--- <u>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p> <p>1. · 2.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3.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u></p> <p>4. <u>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p> <p>--- 정한다. 단,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③</p> <p>---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생략)</p> <p>②</p> <p>--- 정하되, 식품의 안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p>

<p>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학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 기준에 따라</u> --- --- 조리사를 둔다. 제4조제1호에 따른 ---</p> <p>② ~ ④ (생략)</p>
<p><신 설></p>	<p>제7조의2(조리실무사 등의 배치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제7조제1항의 영양교사·조리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 기준에 따라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신 설></p>	<p>제7조의3(배치 기준) ① 제7조제1항· 제7조의2에 따른 배치 기준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적절한 수준에서 급식인원 수, 급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량 경감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배치 기준 협의회를 두어 학교별 배치 인원을 늘릴 수 있다. 배치 기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조(경비부담 등) ① ~ ③ (생략)</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u>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8조(경비부담 등) ① ~ ③ (생략)</p> <p>④ --- <u>급식의 질 향상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급식시설·설비의 보완과 확충을 위하여</u> ---</p>
<p>제12조(위생·안전관리)</p> <p>① (생략)</p> <p><신 설></p> <p>② (생략)</p>	<p>제12조(위생·안전관리)</p> <p>① (생략)</p> <p>② <u>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22조(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p>	<p>제22조(징계)</p>

<p>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신설></p> <p>2. ~ 4. (생략)</p>	<p>1. (생략)</p> <p>2.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안전조치 또는 제39조의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3. ~ 5. (현행 2. ~ 4.호와 같음)</p>
---	---

[학교급식법 시행령]

<p>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시행]</p>	<p>개정안</p>
<p>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시·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p> <p style="text-align: center;">--- 학부모,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표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의 근로자 대표를 말한다). ---</p>
<p>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조리장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2. ~ 4.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p> <p>1. 조리장 :</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설로 하되, 각 학교의 급식량을 조리하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으로 환기가 원활한 지상에 두어야 하며, 조리흡 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 환기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5. 식당: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인원 수에 적절한 크기의 식당을 갖추어야 한다.</p> <p>6. 휴게시설: 조리장, 식품보관실 및 급식관리실과 분리되는 별도의 공간에 두되, 학교급식 종사자 수에 적정한 면적으로서 휴식을 취하는 데</p>

② (생략)	필요한 시설 및 냉난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② 1. ~ 4. (생략) 5. <u>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상태 및 근무환경 만족도</u> 6. (현행 제5호와 같음)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시행]	개정안
4. 식당: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인원 수를 고려한 크기의 식당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 식당을 따로 갖추기 곤란한 학교는 교실배식에 필요한 운반기구와 위생적인 배식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식당: 조리장에 인접한 곳으로 급식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식당을 갖추어야 한다.

1) 학교급식종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하여 규율하도록 함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제1조). 음식의 안전과 함께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 또한 동등한 목적으로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이 음식의 안전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보장될 때 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한편 ‘학교급식종사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어 영양교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을 포괄하는 한편 ‘조리실무사’ 직무를 명시하여 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종사자 안전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는 한편 학교급식종사자의 참여를 보장함

학교급식법은 ① 학교급식위원회(교육감 산하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학교급식계획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 ②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광역·기초단체장 산하에 임의로 설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식품비와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결정하며, 조례로 운영에 관하여 정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제5조). 두개의 기구 모두 시행령과 조례에 의해 학부모와 전문가의 참여는 보장되어있으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참여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학교급식계획에 관하여 심의하나, 심의사항에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식수인원 등 학교급식종사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위원회에 학교급식종사자의 대표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종사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급식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학부모와 학교급식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의 기준에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관련 근거를 두고, 관련 경비 지원시에도 이를 고려하도록 함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의 기준, 그리고 경비 지원의 근거 규정 또한 현행법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만 담고 있다(제6조 및 시행령 제7조). 급식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에 식품의 안전과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조리시설의 개선, 환기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두어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교실배식을 식당배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필요설비'에 '식당'을 명시하고, 교실배식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⁹⁾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이 설치를 의무화한 휴게시설을 급식시설에 별도로 갖추도록 명시하여,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설비의 보완 및 확충을 위한 경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학교급식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

현행법은 학교급식종사자 중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는 것 외에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제7조). 현실적으로 배치기준이 노동강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법령에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배치기준, 조리실무사 등의 배치기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두는 한편, 배치기준의 경우 급식인원수, 급식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배치기준협의회를 두어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학교별 배치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5) 위생 및 안전관리, 품질 및 안전을 위한 규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을 포함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하여, 식품의 위생 및 안전 중심으로 규정되어있다(제12조 제1항).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규정에 식품, 시설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9) 다만 식당의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하여 부칙에 시행 시기에 관하여 유예규정을 둘 여지가 있음.

6)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를 강조하고자 함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②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않거나,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④ 학교급식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를 환기시키는 한편 식품의 안전, 급식 관련 업무의 투명성 보장과 함께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보호 또한 안전한 학교급식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8426호(2021. 8. 17. 시행)	개정안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② (생략)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② (생략) ③ ---. 이 경우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②·③ (생략)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

<p>서는 아니 된다.</p> <p>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 ③ (생략)</p> <p>④ 사업주는 <u>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u></p> <p>⑤ ~ ⑧ (생략)</p>	<p>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 ③ (생략)</p> <p>④ 사업주는 <u>작업환경측정 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각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참석시켜야 한다.</u></p> <p>⑤ ~ ⑧ (생략)</p>
<p>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생략)</p> <p>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생략)</p> <p>②</p> <p>---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중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였거나 산업재해로 요양 후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같다. 다만, ---</p> <p>③ ~ ⑤ (생략)</p>
<p>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u>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u></p> <p>② ~ ⑤ (생략)</p>	<p>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p> <p>---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신설></p>	<p>제138조의2(질병자의 병가 등 보장 및 요양 종료 근로자에 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기간 동안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병가 또는 질병휴직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요양을 마친 근로자의 경우 장애 정도, 사업장의 상황, 해당 근로자의 의사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무로</p>

	<p>전환배치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전환배치한 근로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이 산업재해 발생 이전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전환배치하는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격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p>	<p>제141조(역학조사) ①</p> <p>---- 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하고, 해당 질병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요양급여 신청자 등"이라 한다)을 역학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여야 하는 사업주·근로자대표·요양급여 신청자 등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p>
<p>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p> <p>2. ~ 8. (생략)</p>	<p>제170조(벌칙)</p> <p>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제4항, 제1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p> <p>2. ~ 8. (생략)</p>
<p>제175조(과태료)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략)</p>	<p>제175조(과태료) ①·② (생략)</p> <p>1. ~ 3. (생략)</p>

<p>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u>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u></p> <p>④ (생략)</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3. (생략)</p> <p>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u>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u></p> <p><신설></p>	<p>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u>역학조사에 참석하여야 하는 사업주·근로자대표·요양급여 신청자 등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u></p> <p>④ (생략)</p> <p>⑤</p> <p>1. ~ 13. (생략)</p> <p>14.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u>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u></p> <p>15.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u>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u></p>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p>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시행]</p>	<p>개정안</p>
<p>제99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② (생략)</p> <p>③ 법 제1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p> <p><신설></p>	<p>제99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② (생략)</p> <p>10. <u>조리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u></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p>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시행]</p>	<p>개정안</p>
<p>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p> <p>[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p> <p>3. 분진(7종)</p>	<p>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p> <p>[별표21]</p> <p>3. 분진(8종)</p>

<p>가. ~ 사. (생략) <신설></p>	<p>가. ~ 사. (생략) 아. 조리흡</p>
<p>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p> <p>[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p> <p>2. 분진(7종) <신설></p>	<p>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p> <p>[별표 22]</p> <p>2. 분진(8종) 아. 조리흡</p>
<p>제222조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p> <p>1.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p> <p>2. ~ 4. (생략)</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222조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p> <p>1.</p>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주·근로자대표·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 ---</p> <p>2. ~ 4.(생략)</p> <p>② <삭제></p>
<p>제223조 (역학조사에의 참석) ①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한다)을 말한다.</p> <p>② 공단은 법 제14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한 후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p>	<p>제223조 (역학조사에의 참석) ① <삭제></p> <p>② 공단은 법 제141조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참석시기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p>

1) 유해인자 노출 시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 마련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의 행사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되어있어, 업무상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되어있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조리흙을 포함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¹⁰⁾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조리흙’을 포함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법 제12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별표21)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2)에 조리흙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각 해당규정에 조리흙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요양 종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규정 마련

요양을 마친 후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복귀에 관한 규정만 있고 전환배치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복귀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던 현장에서 다시 일해야한다는 두려움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느껴야 할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요양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의사, 업무능력,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의무 규정을 만들고, 전환배치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전환배치에 필요한 교육, 자격취득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환배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폐암 등이 확진된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마치더라도 실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건강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 질병자의 요청과 의사의 소견을 반영하여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는 이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병가 또는 질병휴직 보장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¹¹⁾

4) 작업환경측정과 역학조사 시 근로자대표 참석 의무규정 마련

현행법은 작업환경측정¹²⁾과 역학조사¹³⁾ 시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할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

10) 다만 작업중지권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만큼, 현재 논의중인 작업중지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할 경우, 유해인자에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소음·진동·방사선·이상기압·이상기온), 생물학적 인자가 포함되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포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규정의 개정논의가 계속되어온만큼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11) 병가 및 질병휴직 보장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안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나,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담는 것이 법령체계에 보다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12)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

고,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의 참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실제 작업환경측정이나 역학조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작업환경측정과 역학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해당 작업에 대하여 요양급여 내지 유족급여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도록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¹⁴⁾, 역학조사 실시 요청권자에 근로자대표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신청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5) 휴식시간 확보 등 건강보호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학교급식종사자의 경우 특정시간대(식사시간)에 맞춰서 업무가 집중되고 급식실 내에서 지속적으로 고온과 가스, 여러 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8시간 근로와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산재를 예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광물흡 등이 심한 장소, 현저히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추가적인 건강보호조치의무를 부과¹⁵⁾하고 있는데, 조리흡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도 포함하여 휴식시간을 적정히 배분하고 근로시간을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13)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①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② 공단은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한 후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14)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24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업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p>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시행]</p>	<p>개정안</p>
<p>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p> <p>[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가.·나. (생략)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라. (생략)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바. ~ 차. (생략)</p>	<p>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p> <p>[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가.·나. (생략)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조리흙을 포함한다) --- 라. (생략) 마. 직업성 암 --- 목재 분진, 조리흙, --- 바. ~ 차. (생략)</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p>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시행]</p>	<p>개정안</p>
<p>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1. · 2. (생략) 3. 호흡기계 질병 가. ~ 카. (생략) <신 설> 4. ~ 9. (생략) 10. 직업성 암 가. ~ 버. (생략) <신 설></p>	<p>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② (생략) ③</p> <p>[별표3] 1. · 2. (생략) 2. 3. 호흡기계 질병 가. ~ 카. (생략) 타. 조리흙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4. ~ 9. (생략) 10. 직업성 암 가. ~ 버. (생략) 타. 조리흙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p>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조리흡'으로 인한 폐암 등의 질환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토론 - 산업재해 신청 과정의 문제점(휴업급여 불승인)¹⁶⁾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실제 폐암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신청을 한 경우 확인되는 문제점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법제도의 개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으나, 정책적인 고민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

*경과 정리

- 2022. 1. 17. : 폐암으로 최초 내원
- 2022. 3. 1. : 1학기 휴직(1개월만 유급처리)
- 2022. 3. 24. ~ 2022. 3. 27 : 수술을 위해 입원
- 2022. 8. 1. : 휴직 종료 후 복귀
- 2022. 11. 7. : 산재승인(통원 65일, 입원 5일)
- 2023. 2. 10. : 휴업급여 불승인(2022. 4. 1. 이후 취업가능)

재해자는 2022. 2. 15. CT 촬영 이후 폐암(1기) 확인되어 1학기를 휴직하였고, 2022. 3. 유급휴직 후 수술을 위해 2022. 3. 24. 5일간 입원을 하였다. 2022. 4.부터 2022. 7.말까지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수술 및 퇴원 후 1주일인 2022. 4. 1.부터 취업할 수 있다는 소견을 주치의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제출하여,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실제 통원기간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여, 재해자는 휴업급여 신청 기간 중 3일치의 휴업급여만 지급받았다. 산재가 인정되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퇴원 후 1주일 뒤부터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으로 인해 통원치료한 날만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실제 폐암 진단을 받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산재신청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진단서에는 '취업치료 가능' 여부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지만 산재 관련 소견서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 주치의가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기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휴업한 기간에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이를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문의사가 어떤 절차를 통해 판단하는지,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치의 소견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폐암 초기 단계에서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통원한 날에만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폐암 수술 이후에는 2-3개월에 한번씩 경과 확인을 위해 통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알 수 없는

16) 휴업급여 관련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발제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상태에서 공단의 판단에 기대야하는데,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고 무급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모든 부담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무원보수규정은 유급병가 내지는 유급휴직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급식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¹⁷⁾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직원 관리규정¹⁸⁾은 산재로 인한 병가기간 최초 180일 동안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하여 재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실종사자의 폐암 등 폐질환이 공론화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실제 폐암이 확진되고 산업재해신청을 한 경우 현실에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술 직후 본래 업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퇴원 후에는 곧바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취업치료 가능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판단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 해당 근로자의 실제 건강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소견으로 '취업가능여부'가 판단되는 문제점 등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4. 마치며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도개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으로 급식실의 유해하고 열악한 환경을 드러낸만큼, 더 이상 학교급식실종사자들이 유해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7) 공무원보수규정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16. 6. 24., 2017. 1. 6., 2018. 1. 18.>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18) 제103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② 채용권자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산재로 인한 병가 기간 최초 180일 동안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하여 재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방학 등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가 소정근로시간에 정상적인 근로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토론 1. 교육부 폐암 종합 대책

교육부 학교안전정책과 정순채 사무관

토론 2. 시·도교육청 결원 현황 및 대책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서기관

토론 3.
피해자 지원, 유해인자 관련
고시 제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최성필 사무관

토론 4.
범부처 간 종합적 해법(법안 제개정)
필요성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

